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의안.....2면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검토보고서.....88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0. 8.(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
----------	-----

발의일자 : 2024. 10. 2.
발의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종전 5인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나. 위원회 구성 : 종전 5인 → 7인 이내(안 제2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5인”을 “7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u> <u>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u></p> <p>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5인</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u> <u>운영에 관한 규칙</u></p> <p>제2조(위원회 구성) ----- ----- <u>7인 이내</u>----- -----.</p>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준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된 조항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29. ~ 8. 19.(21일간)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551(2024.8.9.)]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성주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군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성주군 건축조례」의 개정)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의 개정)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성주군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성주군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성주군농기계수리
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주군재무회계규칙”를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0. 5.27><개정 2010. 12.31><개정 2011. 1. 7><개정 2015. 1. 7>

위 임 사 무 명(권한위임) (제2조 관련)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기 입 관
총무 행정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읍·면
		2. 읍면업무담당주사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읍·면
		3. 읍면직원 소내 전보	"	읍·면
	2. 임용권에 관한 사항	1.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전반	지방자치법 제91조	의회 사무과장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기간연장	"	의회 사무과장
		3.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회 사무과장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 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 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별표7의2)	의회 사무과장
새마을 행정	1. 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대부대상자 추천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4조	읍·면
		2. 자금의 회수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8조	읍·면
		3. 사업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9조	읍·면
재무 행정	1.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징수	지방기본법 제6조	읍·면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읍·면
		3. <삭제 2010. 5.27>		읍·면
		4. 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5.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및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지방재정법 제62조	읍·면	
		6. 지방세 부과 <신설 2007. 8. 2>			
		가. 취득세 자진신고 (단, 이륜자동차)	지방세법 제20조	읍·면	
		나. 취득세 부과 (단, 직권부과대상)	지방세법 제21조	읍·면	
		다. <삭제 2010.12.31>		읍·면	
		라. <삭제 2010.12.31>		읍·면	
		마. <삭제 2010.12.31>		읍·면	
		바. <삭제 2010.12.31> 사.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과(단, 수시분) 아. 주민세 재산분 (단, 직권부과대상) 자.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94조 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읍·면	
		※ 2011.1.1이전의 라·마·바호의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의 추징분은 종전의 위임규정에 따른다.			
		2.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	1.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지방재정법 제67조	읍·면
2.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 집행	"		읍·면		
3.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		읍·면		
3. 물품관리조례중 다음 사항	1. 불용품 매각 처리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4. 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 사항	1. 100만원이하 보조금 관리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7조	읍·면		
환경 행정	1.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1. 수수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읍·면	
	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사항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사회 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1. 삭제 < 2007. 8. 2 > 2.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3. 삭제 < 2007. 8. 2 > 4. 삭제 < 2007. 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읍·면
	2. 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교통 행정	1.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권한	1. 이륜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읍·면
산림 행정	1.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	1. 입산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읍·면
건설 행정	1. 군도에 관한 다음 권한	1.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도로법 제43조	읍·면
민원 행정	삭제 < 2007. 8. 2 >	삭제 < 2007. 8. 2 >		

신 · 구조문대비표

□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u>성주군 재무회계 규칙</u>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 <u>성주군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② -----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 <u>성주군 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의 집행) ① 수입과 지출은 수입,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u>군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 ② (생략)	제15조(예산의 집행) ①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u>성주군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u>재무회계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주군 건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⑥ (생략)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⑤ (생략) ⑥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⑧ (생략)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⑦·⑧ (현행과 같음)

□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생략)</p> <p>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 절차에 관하여는 <u>군재무 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u>성주군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4조(준용) -----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u>성주군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26조(준용)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 <u>성주군 재 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 ----- ----- <u>「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u> ----.

□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① (생 략) ②전 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u>성주군재무회계규칙</u> 에 의한다.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u>성 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u> -----.

□ 관계법령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성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이 하 생 략 -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
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29. ~ 8. 19.(21일간)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552(2024.8.9.)]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20세이상)”을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4조(「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7조(「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 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4세이상”을 “4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1조(「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만18세미만”을 “18세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11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한다.

제13조(「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19세</u> ----- ----- -----.

□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민(<u>만20세 이상</u>)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수여절차) ----- -----(<u>20세 이상</u>) ----- ----- ----- ----- -----.

□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만 6세</u>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6세</u> ----- -----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u>만65세</u>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u>65세</u> ----- ----- ----- ----- ----- ----- ----- ----- -----.</p>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u>만 65세</u>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p>	<p>제3조(지원대상자) ① ----- ----- ----- ----- ----- ----- <u>65세</u> ----- ----- ----- ----- ----- -----.</p>

□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임신, 출산, 아이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3. ~ 15. (생략)</p>	<p>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12세 ----- ----- -----</p> <p>3. ~ 15.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p> <p>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p> <p>2. ~ 6. (생략)</p>	<p>제2조(지원대상) ----- ----- ----- ----- ----- ----- -----.</p> <p>1. 65세 -----</p> <p>2. ~ 6.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 (<u>만4세이상</u>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센터소재지 읍·면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p> <p>2. (생략)</p>	<p>제4조(이용대상) ----- -----.</p> <p>1. ----- <u>4세 이상</u> ----- -----.</p> <p>2.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만19세</u>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19세</u> ----- -----.</p> <p>2. ~ 5. (현행과 같음)</p>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지원대상) ①·② (생략)	제4조 (지원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u>만 19세</u>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u>19세</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접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만18세미만</u> 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12. <u>18세 미만</u> ----- -----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성청소년”이란 성주군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u>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u>의 여성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11세</u> <u>이</u> <u>상 18세 미만</u> ----- -----.</p> <p>2. (현행과 같음)</p>

□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만 6세</u>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p> <p>6.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6세</u> ----- -----</p> <p>6.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숙박비 등 물가상승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4조) → 물가상승 반영
 - 현행 조례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 나. 운임 및 숙박비 정산 실시(안 제5조제1호) → 투명한 여비 집행
 - 운임 및 숙박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준용하되,
 -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함

구 분	개정 전 (2014.12.31)	개정 후	비고
일 비	일당 25,000원	동 일	
식 비	일당 25,000원	동 일	
운 입	버스 및 철도 운임	버스 및 철도 운임 ▶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숙박비 (1박)	특별시·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 4만원	특별시 10만원(상한액) 광역시 8만원(상한액) 그 밖의 지역 7만원(상한액) ▶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다. 조문 정비사항

-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안 제5조제4호)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 조문 삭제 (안 제5조제8호 상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4. 9. 13. ~ 9. 19.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0220(2024.8.30.)호]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1322(2024.8.28.)]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 2는”을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을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하며, 같은 호 중 “「성주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성주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을 ““「공무원보수규정」”은”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1</u>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u>제8조의 2</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 3. (생략)</p> <p>4. 제18조제1항 단서중 「<u>공용차량관리규정</u>」 제4조”는 「<u>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u>」 제3조”로 “<u>동규정 별표 1</u>”은 “<u>동규칙 별표 1</u>”로 본다.</p> <p>5. ~ 7. (생략)</p> <p>8. <u>별표 1</u>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u>「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u>」”은 “<u>「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u>”으로, “<u>「공무원</u></p>	<p>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u>----- -----.</p> <p>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p> <p>1. <u>제8조의2제5항</u>은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공무원용 차량관리 규정</u>」 제4조” -- 「<u>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u>」 제6조” -- ----- -.</p> <p>5. ~ 7. (현행과 같음)</p> <p>8. ----- <u><삭제></u></p>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
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
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 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관련법령 발췌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 000, 그 밖의 지역은 70, 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 일부개정 시 비용추계 사유가 없음에 따라,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6조의 2)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0490(2024.9.5.)호]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2708(2024.9.6.)호]
- 마. 입법예고 : 2024. 9. 5. ~ 9. 25.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9년 12월 31일</u>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장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4조)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0490(2024.9.5.)호]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2709(2024.9.6.)호]

마. 입법예고 : 2024. 9. 13. ~ 9. 19.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u>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장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안이유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목적

-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관외 유출 방지
- 별고을교육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습만족도 제고

나. 출연계획

- 출연예산 :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 2024년도 출연금 :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 교육원 운영비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연도	예산액(안)	인건비	운영비	비고
2025	1,300	919	381	

- 대상인원 : 126명(중등부 66, 고등부 60)
- 수업운영 : 주5일(종합반), 전임강사 담임제 운영
- 운영인력 : 13명(원장, 전임강사 7, 시간강사 4, 행정보조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에 편성

다. 비용추계서 붙임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4조(기금보조 및 사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성주군별고을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교육원 운영인력 등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총 비용(a-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합 계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군비(기금)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5. 부대의견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적립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함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이자수익만(연평균 5억원 정도)으로 별고을교육원 운영 및 장학회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출연금을 받아 교육원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음
- 적립금 사용 시(관리감독청인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필요) 원금 감소와 그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이 어려움

6. 작성자

-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장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나. 민원서식 개선 : 서식디자인 개선, 큰 글자 서식 개편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9. 9.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8676(2024.07.25.))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35377(2024.7.23.))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교복구입비지원 조례」의 개정) 성주군 교복구입비지원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
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
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별고을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여부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사업 종료 후 5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성주군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순국선열 <input type="checkbox"/> 애국지사 <input type="checkbox"/> 전몰군경 <input type="checkbox"/> 전상군경 <input type="checkbox"/> 순직군경 <input type="checkbox"/> 공상군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국가보훈대상자증 증빙서류	수수료
담당자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 번호
신 청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주 소
	업종/업태
	계좌번호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고을택시 운행일지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운행일시	년 월 일(요일) 출발시간 : 시 분		
운행구간	출발지 : () ~ 도착지 : ()		
차량번호			
탑승인원 (명)	탑 승 요 금(원)		
	운행요금	보조금청구액	주민부담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인	
운 전 자			(서명 또는 날인)	
탑 승 자	①			(서명 또는 날인)
	②			(서명 또는 날인)
	③			(서명 또는 날인)
	④			(서명 또는 날인)
	⑤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년 월분)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대상마을			
신청인	성 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	운행요금	탑승인 원	지원금 산출 내역	
			운행요금	보조금청구액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별고을택시 운행일지 1부, 통장사본 1부
------	------------------------

□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민원과 민원팀장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조항 정리로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 삭제
-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병기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9. 9.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8676(2024.07.25.))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35376(2024.7.23.))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성주군 경관 조례」의 개정)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성주
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제7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시 설	명 칭			
개 요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연 면 적		사용층수	층
	사용면적			m ²
설 비	주요시설			m ²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성 주 군 수 귀 하				
첨 부 서 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 관련)					
법 인 (단 체 명)			(☎)		
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간	당초	부터	까지	연장 부터 까지
사 유					
기 타 사 항					
<p>『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성주군 영화관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 주 군 수 귀 하</p>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3조(「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 (제16조 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입금계좌확인정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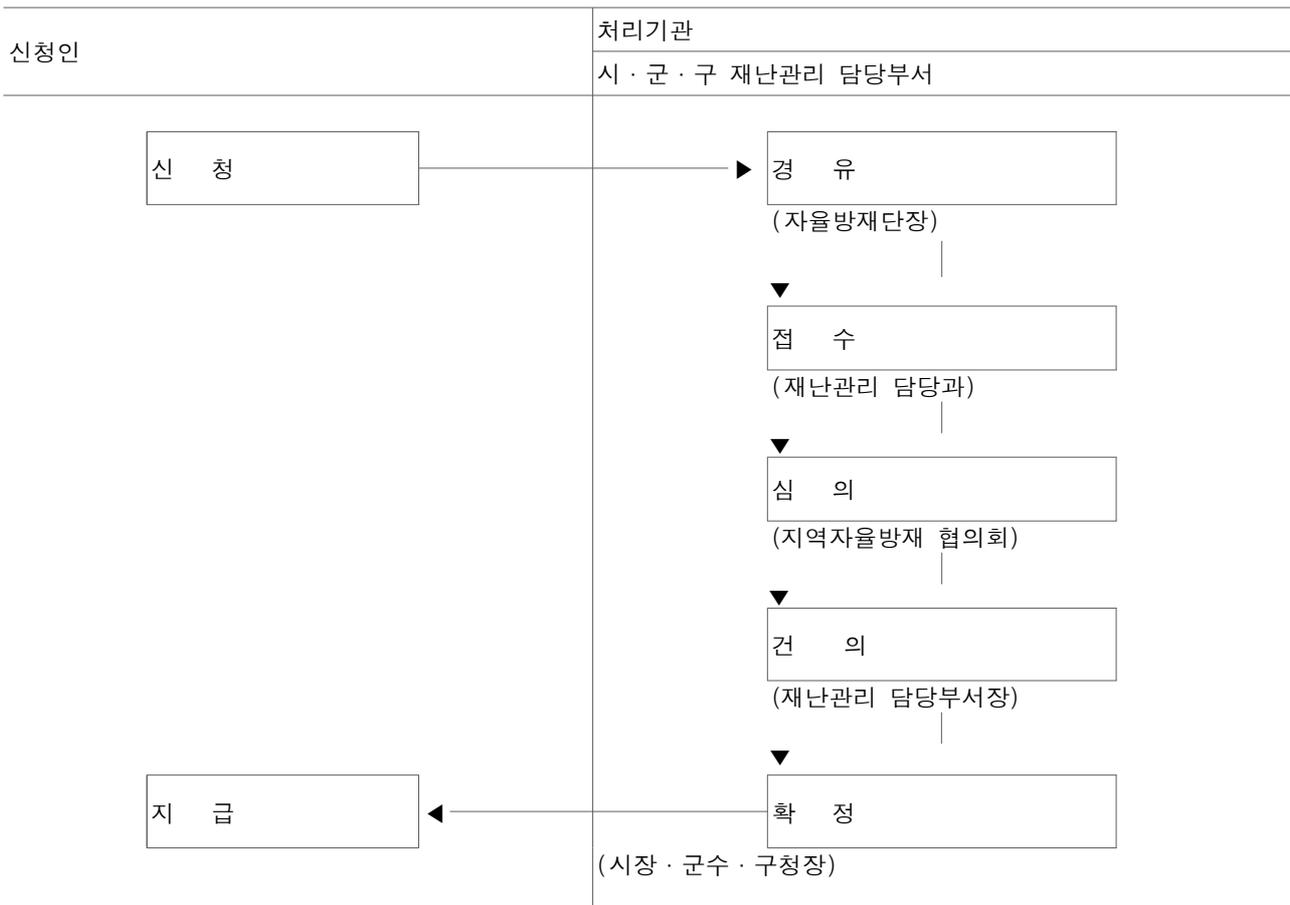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1.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성주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u>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u>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1호,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신청서, 성주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2. 성주군 경관 조례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p> <p><첨부도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 (2) 경관협정운영회 회의록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p> <p><첨부도서></p> <p><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3.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별지 제7호서식]</p> <p>요양,장해,장제,유족 재해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해보상 : (생략)</p> <p>장제·유족보상 :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 <u>인감증명서</u>, 입금계좌확인정보</p>	<p>[별지 제7호서식]</p> <p>요양,장해,장제,유족 재해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해보상 : (현행과 같음)</p> <p>장제·유족보상 : ----- -, <u>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u> 중 하나, -----</p>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민원과 민원팀장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0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3. 8. 16.) 시행에 따른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10조의2)
- 다. 관계규정의 준용 삭제(조례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4. 9. 4(수) ~ 9. 25(수) [21일간]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0380(2024.9.3.)]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112(2024.9.2.)]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p>	<p><삭제></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삭제></p>

관련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게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관련법령 발췌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보고) 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4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성 주 군 의 회

2024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건의와 대안 제시

방문 개요

- 회 기 :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4. 10. 10.(목) ~ 10. 17.(목) [6일간]
- 장 소 : 성주읍성 외 12개소
- 참 석 : 15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의사팀장 외 3)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현장 개선사항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장 현황

읍 면	사업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비 고
계	7개면, 13개소	7개 부서	
성주읍	①역사테마공원 내 성주읍성	관 광 과	
	②도시재생사업(2단계)	도시계획과	
	③성주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도시계획과	
	④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농 정 과	
선남면	⑤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수륜면	⑥일반재산 교환 예정지	재 무 과	
	⑦법인수목장림 관련 민원 현장	가족지원과	
가천면	⑧가야산 탐방로(법전리 구간) 주차장 조성 예정지	환 경 과	
금수강산면	⑨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관 광 과	
대가면	⑩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⑪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 광 과	
월항면	⑫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⑬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환 경 과	

세부시간계획

10. 10.(목)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20	20'	이 동	• 의회 출발	
10:20 ~ 10:40	20'	가천면	• 가야산 탐방로(법전리 구간) 주차장 예정지 가천면 법전리 1100	환 경 과
10:40 ~ 10:55	15'	이 동		
10:55 ~ 11:15	20'	수륜면	• 법인수목장림 관련 민원 현장 수륜면 계정리 산118-8	가족지원과
11:15 ~ 11:30	15'	이 동		
11:30 ~ 12:00	30'	수륜면	• 일반재산 교환 예정지 수륜면 백운리 1282-27 → 산59-1	재 무 과
		중 식		

10. 11.(금)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35	5'	이 동	• 의회 출발	
10:35 ~ 10:55	20'	성주읍	• 성주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성주읍 예산리 334-1	도시계획과
10:55 ~ 11:00	5'	이 동		
11:00 ~ 11:30	30'	성주읍	• 도시재생사업(2단계) -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성주읍 성주읍1길 13 - 별의별 문화마당 성주읍 성산리 2102-1 - 경산리 마을 만들기 성주읍4길 25	도시계획과
		중 식		

10. 14.(월)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4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40 ~ 11:00	20'	대가면	•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대가면 옥성리 20	체육시설 사업소
11:00 ~ 11:20	20'	이 동		
11:20 ~ 11:40	20'	선남면	• 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선남면 도흥리 19-1	체육시설 사업소
		중 식		

10. 15.(화)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4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40 ~ 11:00	20'	월항면	• 월항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월항면 보암리 890-3	체육시설 사업소
11:00 ~ 11:15	15'	이 동		
11:15 ~ 11:35	20'	월항면	•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월항면 인촌리 산11-12	환 경 과
		중 식		

10. 16.(수)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45	15'	이 동	• 의회 출발	
10:45 ~ 11:05	20'	대가면	• 심산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대가면 칠봉리 900	관 광 과
11:05 ~ 11:25	20'	이 동		
11:25 ~ 11:45	20'	금수강산면	•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금수강산면 봉두리 산105-3	관 광 과
		중 식		

10. 17.(목)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35	5'	이 동	• 의회 출발	
10:35 ~ 10:55	20'	성주읍	• 역사테마공원 내 성주읍성 성주읍 예산리 516	관 광 과
10:55 ~ 11:00	5'	이 동		
11:00 ~ 11:30	30'	성주읍	•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성주읍 대항리 654	농 정 과
		중 식		

※ 방문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0. 8.(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나. 위원회 구성 : 종전 5인 → 7인 이내(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제명 변경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일괄개정 이유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준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된 조항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29. ~ 8. 19.(21일간)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551(2024.8.9.)]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14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일괄개정 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및 행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7. 29. ~ 8. 19.(21일간)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38552(2024.8.9.)]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2개 조례에 대해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숙박비 등 물가상승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4조) → 물가상승 반영

- 현행 조례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나. 운임 및 숙박비 정산 실시(안 제5조제1호) → 투명한 여비 집행

- 운임 및 숙박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준용하되,
-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함

구 분	개정 전 (2014.12.31)	개정 후	비고
일 비	일당 25,000원	동 일	
식 비	일당 25,000원	동 일	
운 임	버스 및 철도 운임	버스 및 철도 운임 ▶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숙박비 (1박)	특별시·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 4만원	특별시 10만원(상한액) 광역시 8만원(상한액) 그 밖의 지역 7만원(상한액) ▶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다. 조문 정비사항

-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안 제5조제4호)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 조문 삭제
(안 제5조제8호 상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4. 9. 13. ~ 9. 19.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0220(2024.8.30.)호]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1322(2024.8.28.)]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업무가 외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6조의 2)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0490(2024.9.5.)호]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2708(2024.9.6.)호]

마. 입법예고 : 2024. 9월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4조)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0490(2024.9.5.)호]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2709(2024.9.6.)호]

마. 입법예고 : 2024. 9. 13. ~ 9. 19.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목적

-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관외 유출 방지
- 별고을교육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습만족도 제고

나. 출연계획

- 출연예산 :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 ※ 2024년도 출연금 : 1,085백만원(군비 1,000, 금고협력금 85)
-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 교육원 운영비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연 도	예산액(안)	인건비	운영비	비고
2025	1,300	919	381	

- 대상인원 : 126명(중등부 66, 고등부 60)
- 수업운영 : 주5일(종합반), 전임강사 담임제 운영
- 운영인력 : 13명(원장, 전임강사 7, 시간강사 4, 행정보조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에 편성
- 다.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별고을교육원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별지 제6호)

나. 민원서식 개선 : 서식디자인 개선, 큰 글자 서식 개편

-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9. 9.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8676(2024.07.25.))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35377(2024.7.23.))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민원서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 담당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외 2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조항 정리로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 삭제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병기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9. 9.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8676(2024.07.25.))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35376(2024.7.23.))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3. 8. 16.) 시행에 따른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10조의2)
- 다. 관계규정의 준용 삭제(조례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4. 9. 4(수) ~ 9. 25(수) [21일간]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0380(2024.9.3.)]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112(2024.9.2.)]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 기한 및 관계 규정의 준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